

부산지방법원 2024. 9. 12 선고 2023나70510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 2024. 9. 12 선고 2023나70510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12. 7 선고 2022가단10275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동진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앤케이

담당변호사 강창옥

변론 종결 2024. 8. 29.

판결 선고 2024. 9. 12.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12. 7. 선고 2022가단102750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2020. 8. 2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8. 25. 접수 제5743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내용은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2면 아래서 8행의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 다음에 『(이하 이에 기하여 C이 원고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연대보증금을 '이 사건 연대보증금'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자신의 책임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이하 '이 사건 처분행위'라고 한다)하였고, 이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취소되고, 피고는 C에게 위 계약에 기하여 마쳐진 이 사건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피고

- 1) C은 위 연대보증금에 관한 주채무자인 E의 신규자금 유통을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2) 이 사건 처분행위에 관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에 관한 C의 사해의사가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위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 3) 따라서 제1심판결은 취소되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범위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는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므로 그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만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원고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그 이후 담보권의 실행 등으로 소멸한 부분을 제외하고 난 다음 실제로 남은 미회수 원리금 전부가 아니라 사해행위 당시 채권최고액 및 이 사건 담보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채무원리금 및 그 중 원금 부분에 대한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까지 발생한 지연이자 상당의 금액이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제1, 2 임야의 가액이 합계 182,883,020원(= 제1 임야 138,855,080원 + 제2 임야 44,027,940원)인 사실, 그 당시 위 각 임야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채권최고액을 12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상태였던 사실, 그 당시 제1 임야에 관하여 채권자를 N조합으로 한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그 피담보채무액이 100,000,000원이었던 사실, 이 사건 처분행위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금 채권 원리금이 93,493,150원(= 75,000,000원 + 75,000,000원 × 15% + 75,000,000원 × 15% × 235/365, 원 미만 버림)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원고가 제1, 2 임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82,883,020원(= 위 각 임야 가액 182,883,020원 - 선순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100,000,000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연대보증금 채권 원리금에서 위 우선변제 가능액을 뺀 10,610,130원(= 93,493,150원 - 82,883,0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이 사건 처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¹⁾

나. 사해행위 해당 여부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처분행위를 통해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E의 신규자금 유통을 통한 사업의 갱생이나 계속 추진을 위하여 이 사건 처분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5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을 비롯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행위가 E의 사업의 갱생이나 계속 추진을 위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C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선의 관련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고(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연대보증인에게 부동산의 매도행위 당시 사해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연대보증인이 자신의 자산상태가 채권자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는 데 부족하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였는가 하는 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12067 판결 등 참조). 한편,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채무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있고,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수익자의 선의 여부만이 문제되고, 수익자의 선의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0, 11호증, 을 제1, 10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행위에 관한 C의 사해의사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처분행위 무렵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 70%에 해당하는 합계 70,000,000원을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자체가 C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로 마쳐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C의 채권자들 중 대부분은 그 채권에 대한 물적 담보를 확보하고 있었다. 비록 부산신용보증재단의 채권이 물적 담보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하였으나,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 그 채권액이 크지는 않았다. 원고 역시 제1, 2 임야에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이 사건 연대보증금 채권에 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있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부 우선변제권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그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았다.

③ 제1 임야가 경매절차에서 그 가액을 크게 하회하여 매각됨에 따라 원고가 그 매각대금에서 실제 배당받은 돈이 없기는 하나, 이는 경매절차에서의 유찰 등과 같이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C으로서는 예상하기 어려운 사후적인 사정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④ 앞서 본 제1, 2 임야의 가액은 이 사건 소송에서 감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이다. 거래가 빈번하지 않고 비교대상 매물도 많지 않은 임야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C은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제1, 2 임야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위 각 임야의 소유자가 아닌 피고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⑤ 비록 피고와 C이 자매지간이라는 하나, ㉠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원고와 피고를 제외한 C의 채권자들이 모두 금융기관이었고, 대부분의 채무에 물적 담보가 설정되어 있었던 점, ㉡ 그 당시 C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고 있었고, C 소유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이나 집행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점, ㉢ M의 사실확인서(을 제17호증)의 내용이나 자금이 이체된 경로 등에 비추어 볼 때, C은 E에 대한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담보를 설정하여 준 것으로 보일 뿐, 자신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돈을

차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 C은 부산에 거주하고 피고는 울산에 거주하여 생활근거지를 달리하고 있는 점, ㉠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E가 정해진 기간까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지 못하는 것을 조건으로 발생하는 것인 점, ㉡ 피고가 E의 위 토지 매매 사업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피고로서는 C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윤영

판사오지영

판사양철순

별지

1) 위 연대보증금 채권이 E가 원고에게 2020. 8. 31.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못하는 것을 조건으로 발생하는 '조건부 권리'이기는 하나,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가까운 장래에 그러한 조건이 성취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 되어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